

「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3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, 2017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,147,832천원으로서, 이중 10건에 852,643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〈2016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〉

(단위 : 천원)

연번	예비비지출 사유	지출결정액	비고
계	10건	852,643	
1	5.2~5.5 강풍피해에 따른 노인여가시설 복구	18,810	
2	5.2~5.5 강풍피해에 따른 계방산정보화마을센터 피해복구	4,700	
3	5.2~5.5 강풍피해에 따른 체육시설 복구	37,000	
4	5.2~5.5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	133,875	
5	봉평면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유실에 따른 긴급복구	200,000	
6	평창운수(주)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임차	22,800	
7	평창운수(주)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임차	150,000	
8	5.2~5.5 강풍피해에 따른 교통시설 복구	39,000	
9	AI 차단방역을 위한 긴급방역	7,000	
10	5.2~5.5 강풍피해에 따른 농업재해지원금	239,458	

3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서
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
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의
지출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.

-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,147,832천원이며,
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852,643천원이 지출결정되었고,
그 중 721,810천원이 지출되고 118천원이 이월되었으며,
130,71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음.

- 이와 같은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
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

2016년도 예비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,

예비비 지출은

5.2~5.5일 강풍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비와 재난지원금,

농어촌도로 201호 유실에 따른 긴급복구비,

평창운수(주)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임차료,

AI차단 긴급방역 등의 내용으로 지출되어

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과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

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음.

따라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
것으로 검토되었음.

【관련 법령】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(예비비 사용의 제한)

- 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.